

#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8월 2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8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2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5년 9월 5일)  
상정 ·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로과장 이 원 계)

### 제안이유

-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도로법이 개정(2004. 1. 20. 법률 제7103호, 시행 2004. 7. 21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골자

-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함.

(안 제3조제1항)

### 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<p>○ 도로, 인도를 상시 점용하고 노점을 하는 행위를 자주볼수 있는데 과태료 금액의 인상보다는 우선 단속인원을 확보하고 단속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선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?</p>	<p>○ 인원의 제한으로 상시단속은 불가능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기동반을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까지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는 것이 사실임.</p>
<p>○ 년도별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 ?</p>	<p>○ 별도 자료를 작성 제출하겠습니다.</p>
<p>○ 보행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시행을 늦추는 것은 가능한지 ?</p>	<p>○ 지난해부터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전 계고를 3회 실시하여 충분한 계도와 시간을 주고 있음.</p>
<p>○ 과태료 300만원은 큰 금액인데 시행의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?</p>	<p>○ 노점상 단속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면 납부후 손수레를 찾아가 영업을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과태료 인상이 요구됨</p>
<p>○ 과태료 부과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체납액만 늘어나게 되는데 ?</p>	<p>○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도 가능하고 구류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될것임.</p>
<p>○ 조례 시행후 단속부서의 노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보행환경이 확보되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?</p>	<p>○ 노점행위, 노상영업 행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나 시민의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것임.</p>

#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#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## 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#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#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26호
의결 년월일	2005. 9. 9 (제121회)

제출년월일 : 2005. 8. 25.

제출자 : 부천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도로법이 개정(2004. 1. 20. 법률 제7103호, 시행 2004. 7. 21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함.(안 제3조제1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##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”를 “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“다음 각호의 1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20만원이하”를 “300만원 이하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하고,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“도로법”을 각각 “「도로법」”으로 하며, 제3조제3항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</b></p> <p>제3조(과태료) ①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<u>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</u>를 한 자에 대하여 <u>20만원이하</u>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p> <p>1.~4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<b>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 부과징수 조례</b></p> <p>제3조(과태료) ①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 -----<u>300만원 이하</u> ----- ----.</p> <p>1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